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99호

2018. 12. 31.(월)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조례]

제6938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6939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694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694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6942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694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6944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10
제6945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제6946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18

[규칙]

제425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5
제425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4

자치법규

[조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6938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예산정책연구위원회) ① 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예산정책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하고, 제33조제1항제2호하목부터 더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하. 시장비서실 소관 중 청년청에 속하는 사항
- 거. 정무부시장실 소관 중 인권담당관에 속하는 사항
- 너. 서울디지털재단에 관한 사항
- 더.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제3호나목 중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정책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6호가목 중 “복지본부”를 “복지정책실”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제7호가목 중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가목 중 “도시재생본부”를 “도시재생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건축국”을 “주택건축

본부”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공공개발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3조제1항제9호가목 중 “도시교통본부”를 “도시교통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민선7기 조직개편을 위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9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시장비서실 소관 중 청년청에 속하는 사항’, ‘정무부시장실 소관 중 인권담당관에 속하는 사항’, ‘서울디지털재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3조제1항제2호)
- 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중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정책실’로 변경하고,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변경함(안 제33조제1항제3호)
- 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중 ‘복지본부’를 ‘복지정책실’로 변경하고,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3조제1항제6호)
- 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중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변경함(안 제33조제1항제7호)
- 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중 ‘도시재생본부’를 ‘도시재생실’로 변경하고, ‘주택건축국’을 ‘주택건축본부’로 변경하고, ‘공공개발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33조제1항제8호)
- 사. 교통위원회 소관 중 ‘도시교통본부’를 ‘도시교통실’로 변경함(안 제33조제1항제9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939호****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월정수당	3,864,590원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지급기준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월정수당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3,815,000원”에서 “3,864,590원”으로 변경함(안 별표 2)

◆ **서울특별시조례 제6940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을 각각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로 한다.

제6조 제목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조성”을 “조성·활성화”로 하여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5호로 한다.

3. 창업정책 수립·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캠퍼스타운 조성·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서울과 타 지역 간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 제목 “(복지본부)”를 “(복지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지원·관리”를 “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로 한다.

제8조 제목 “(도시교통본부)”를 “(도시교통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도시철도 계획·관리”를 “도시철도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시철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호 중 “환경계획, 환경교육, 환경협력”을 “환경계획, 환경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비산먼지 관리,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을 “미세먼지에. 경보제,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생활대기질 관리”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급, 온실가스 감축,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생활대기 관리”를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한다.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시민협력 및 에너지공동체 활성화”를 “시민협력,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에너지교육”으로 한다.

4.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규 관광산업분야 육성, MICE 및 융복합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15조 제목 “(안전총괄본부)” 를 “(안전총괄실)”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총괄본부장” 을 “안전총괄실장” 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도시재생본부)” 를 “(도시재생실)”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본부장” 을 “도시재생실장” 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중진의 제8호) 중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수립·조정” 을 “주거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 으로 한다.

제16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호 중 “생활권계획 수립·조정” 을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심 및 광역중심 발전계획 수립 및 생활권계획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

제18조 제목 “(주택건축국)” 을 “(주택건축본부)”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축국장” 을 “주택건축본부장” 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역세권청년주택·사회주택·공동체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건축물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비사업 및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제50조제2항 중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을 “청계천로 8(무교동)” 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72조” 를 “제74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구 신설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을 고려한 실·본부·국 재편 : 1실 9본부 9국→6실 5본부 8국(안 제4조)

(1) 경제·복지·교통·안전·재생 분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관련 본부를 실로 재편함

- ▶ 경제진흥본부 → 경제정책실, 복지본부 → 복지정책실,
도시교통본부 → 도시교통실, 안전총괄본부 → 안전총괄실,
도시재생본부 → 도시재생실

(2) 핵심 프로젝트 실행력 강화를 위해 주택건축국을 주택건축본부로 재편함

나. 기구 변동과 현안 사항을 반영한 조직 및 분장사무 규정 정비

(1)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주택건축본부의 기구 변동사항 반영 및 분장사무 정비(안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8조)

(2) 복지정책실, 도시재생실의 기구 변동 반영(안 제7조, 제16조)

(3) 기후환경본부, 관광체육국, 도시계획국 분장사무 규정 정비(안 제10조, 제13조, 제17조)

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기관 소재지 및 시립병원 명칭 및 위치의 근거규정 등을 현행화(안 제50조 및 별표 3의 제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694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239명”을 “18,4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278명”을 “10,40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7,002명”을 “7,0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498명”을 “50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310명”을 “32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151명”을 “157명”으로 한다.

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18,239”을 “18,422”으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10,304”를 “10,451”로 하며, 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242	147	16	8	67	4
----	-----	-----	----	---	----	---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9,909” 을 “10,049” 으로 하고, 연구직 계의 계란 중 “372” 을 “376” 로 하며, 연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관	62	5		34	23	
-----	----	---	--	----	----	--

같은 표 연구사의 계란 중 “312” 를 “314” 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의 계란 중 “7,002” 을 “7,027” 로 하며, 소방령 이하 계의 계란 중 “6,967” 을 “6,992” 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의 계란 중 “498” 을 “505” 로 하며, 조교의 계란 중 “62” 를 “69”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정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급증 분야의 중점 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8,239명에서 18,422명으로 183명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래·안전·복지·균형 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력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인력 증원(+100명)

- (1)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스마트시티 구축, 청년의 꿈에 투자하는 청년청 신설 등 미래 분야 증원(+21명)
- (2) 대기질 관리체계 정비 및 연구역량 강화, 지하철 안전성·공공성 강화,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 등 안전 분야 증원(+16명)
- (3) 틈새 없는 지역돌봄 서비스 제공, 건강한 성평등 문화 확산, 주거취약계층 복지기능 강화 등 복지 분야 증원(+22명)
- (4) 강남북 균형발전, 교통 불균형 해소,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케이팝 활성화 등 균형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분야 증원(+18명)
- (5)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신설, 온라인민주주의추진반 신설, 갈등조정 강화, 인권 교육·영향평가 본격 시행 등 기타 분야 증원(+23명)

나. 주요기능 강화 및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증원(+33명)

- (1) 시민숙의예산제 운영, 조직문화 개선, 채용시험 관리, 박물관 분관 체계적 운영 등 인력 보강(+17명)
- (2) 전략적 자산취득 강화,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가족돌봄복지지원센터 설치 등 기능 보강(+16명)

다. 소방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 소방 인력 및 시립대 교원 증원 (+32명)

라.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인력 및 입법지원 전문 인력 증원 (+18명)

◆ 서울특별시조례 제6942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제4항 본문 중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를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市 거주 민주·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의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94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18.10월)됨에 따라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료를 지원하여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제13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944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용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하 “특정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또는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 후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합병·분할은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7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13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

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제1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를 준용한다.

제2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제2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
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직접 사용의 범위)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이 ' 18.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기
한을 연장하고 신설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감면대상별로 감면기간을 개별적으로 규정(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 제12조)
- 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항 신설(안 제2조)
- 다. 도시정비사업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안 제9조)
- 라.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 감면대상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
하던 것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안 제12조)
- 마.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45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세”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로, “고취시켜”를 “고무하여”로,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12조”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이하 “서울특별시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만 해당한다)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

제2조제2호 중 “전자납세자: 지방세를”을 “전자납세자: 서울특별시세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공납세자:”를 “유공납세자:”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세”를 “서울특별시세 등”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과”를 “제2항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를 “서울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세타”를 “국세 및 다른”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이 있음에도 우리 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므로 모범납세자 선정 시 전국 체납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어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추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중에 서울특별시세 등을 10년간 체납사실 없이 납부하고, 최근 8년간 계속하여 연 2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도록 개정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946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

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한다.
5.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영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
 -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 다.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7.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8.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7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9. “마을공동체”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호나목 단서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한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일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빈집 소유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7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의 실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9조(빈집의 활용방법)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빈집정비 시행자) ① 시장, 구청장 또는 빈집의 소유자는 제9조에 따른 빈집의 활용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효율적인 빈집정비를 위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빈집 관리위탁)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빈집 입주 또는 이용자에 대한 임대료 또는 사용료 징수
2. 그 밖에 빈집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입주자 선정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입주요건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호에 따른 빈집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가 당초 계획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13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 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
2. 화재발생 요인 차단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도시정비조례 별표3과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1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공사완료의 고시)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

자료부터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빈집활용을 하는 경우 제45조 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빈집 임차 또는 매입비용

2. 빈집 정비비용

3. 빈집에 대한 관리비용

4. 빈집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 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투자기금

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기금

3.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③ 시장은 시행자가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된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지원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빈집의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치구별 빈집 정비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2조(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②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한 정보를 도시정비조례 제69조 제1호에 따른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시공자 등의 선정방법) ①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총회에서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경쟁입찰을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공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공공지원 적용)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18조제1항 및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본다.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25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제3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② 영 제19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26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2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28조(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다.

1.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서 또는 운영규약
2.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정관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9조(건축심의 내용) ① 영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적정성 여부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②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를 요청받은 구청장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통합심의)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도시재생위원회의(이하 “시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31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

한 의견서

제32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3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6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①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층수” 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2항의 “평균층수” 를 말한다. 이하 같다) 7층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 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영 제25조제2항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 전체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제37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④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9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 등)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이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제40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1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3.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

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 ②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1제2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41조(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42조(공사완료의 고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방법·절차 및 준공인가·공사완료의 고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43조(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45조 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의 산정기준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자치구 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5. 공동택배함, 공동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6.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배움터, 마을활력소 등 마을공동체시설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5조(사업비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주민 이주비 용자에 따른 이자
 2. 빈집의 개량비용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비용
- 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다만, 기초조사비에 포함되는 항목 중 사업분석 비용은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빈집의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4.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등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6조(사업비의 용자 등)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60퍼센트 이내에서 용자하거나 용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구획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까지 용자하거나 용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세입자 보상비
 4. 주민 이주비
 5. 주민합의체 및 조합의 운영자금
 6. 설계비 등 용역비
 7. 건축공사비
- ② 용자한도는 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자할 수 있다.
1. 용자금에 대한 대출 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정하되, 주민합의체·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등 용자 비목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용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③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용자를 신청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사업에서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전원 합의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 조합 총회의 의결
- ④ 제3항에 따른 용자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규정 또는 정관(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주민합의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2. 용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조합장(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것 이외에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마을공동체
 3. 제1항 목적의 달성을 위해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4. 구청장 또는 토지구획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운영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마을기금의 적립, 사용 등에 관해서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48조(마을공동체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지원 경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경우 문서로 마을공동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마을공동체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경비 환수 또는 공동이용시설 관리주체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9조(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제50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41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제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면적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제51조(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영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지방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말한다.

제5장 보칙

제52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①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②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집수리 지원센터를 말한다.

제53조(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제5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단계별(계약금·중도금·잔금)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56조(조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자와 사업시행

자 간의 매도청구 대상, 매도청구 평가액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시정비조례 제67조에 의한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는 조정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협의체는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며, 조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인을 호선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③ 조정협의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한다.

1. 사업시행자
2.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3. 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자
4. 기타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조정협의체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 또는 의결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⑤ 조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매도청구의 대상에 대한 분쟁
2.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구청장은 조정협의체 운영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조정협의체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조정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8. 2. 9. 시행)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와 저층주거지 경관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정함(안 제3조).
- 나.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안 제5조),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 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빈집을 임대주택, 주민복지 증진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 빈집 활용 주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라.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빈집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마. 시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 바. 시장은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를 융자 또는 보조시 사회투자자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사.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규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함(안 제24조)
- 아.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한(60일)을 설정하고(안 제29조), 통합심의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0조)
- 자.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7층 이하로 하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차.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안 제43조)
- 카.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비용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45조)
- 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하려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은 20퍼센트 이상으로 함(안 제50조)
- 파.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규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25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을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청년청(담당관)”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일자리노동정책관·비상기획관·정보기획관·민생사법경찰단을”을 “여성가족정책실·노동민생정책관·비상기획관·스마트도시정책관·남북협력추진단·민생사법경찰단을 두며”로, “밑에 도시공간개선단·기술심사담당관”을 “도시공간개선단·공공개발기획단·기술심사담당관을 두고, 정무부시장 밑에 인권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보”를 “공보, 젠더”로, “공보특보”를 “공보특보, 젠더특보”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청년정책, 시정 주요갈등 조정, 인권 사무”를 “시정 주요갈등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혁신담당관·민관협력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청년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인권담당관을 두고, 사회혁신담당관·민관협력담당관·청년정책담당관·인권담당관”을 “사회혁신담당관·민관협력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을 두고, 사회혁신담당관·민관협력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민 제안 및 시민의 정책 참여에 관한 사항

제5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민봉사, 신속행정”을 “시민봉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민소통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신속행정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으로, “뉴미디어담당관·신속행정담당관은”을 “뉴미디어담당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8항에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행정서비스 현장 제도 총괄

16. 행정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7. 주요 행정서비스 및 민원의 밀착지원에 관한 사항

18. 민원법률자문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년청) ① 청년청(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청년청(담당관)은 청년정책업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의 청년청(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청년청(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2.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3. 청년정책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개정 및 운영
4. 청년허브 등 청년활동지원기관 운영 및 지원
5. 서울청년의회 운영 및 지원
6. 국내외 청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7. 청년미래기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시행
8.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청년 공간 조성·운영
9. 청년인재 발굴 및 지원

제7조제2항 중 “보육, 가족, 출산” 을 “여성권익, 보육, 가족, 출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을 두고, 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을 “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성별영향평가”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5호, 제8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성안심정책 수립 및 시행

제7조제5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일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제7조제5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여성권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2.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3.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상담·자활 지원
5. 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6. 여성 노숙인 등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7. 십대여성의 상담·성매매예방·안전 및 건강 지원 사업

⑩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
2. 다문화 사회 조성 및 글로벌화 사업 총괄 기획·조정·홍보
3. 외국인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 내·외국인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6. 다문화가족 관련 시설 지정·설치·운영

제7조제8항(종전의 제7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관리
6.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7.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조사연구
8. 건강가정 문화조성 업무
9. 저출생 대응 인구·가족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10. 일·생활 균형, 자녀양육 환경개선 등 출생 친화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
11.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2. 아동친화도시 계획수립, 아동권리 및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1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보호필요아동 발생 예방 및 지원
14. 가족·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등록 등에 관한 사항
15.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시설아동 보호지원

제7조의2의 제목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일자리 창출, 노동행정,”을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행정, 소상공인지원, 공정경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노동민생정책관 밑에 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을 두고, 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푸드트럭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시민시장 등 소상공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8.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0. 서울품물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 간편결제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제로페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⑥ 공정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보호정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2.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
 4.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 거래업에 관한 사항
 9. 일반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1.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3.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14.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15.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6.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18.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9.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제7조의2제4항(중전의 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기획관”을 각각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기획관 밑에 정보기획담당관·통계데이터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두고, 정보기획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통계데이터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 밑에 스마트도시담당관·빅데이터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두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빅데이터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데이터담당관”을 “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기획담당관”을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장기 정보화추진계획”을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3. 스마트도시 시민·기업 협력 추진

4. 사물인터넷 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5. 블록체인 계획 수립·조정 및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 제9조제5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스마트도시 홍보·마케팅 및 해외교류 협력 추진
- 제9조제5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위고(WeGO) 사무국 운영 지원
- 제9조제5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7호)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데이터담당관”을 “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집·저장·활용업무”를 “수집·저장·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5.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6.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
 7. 통계조사의 총괄·조정 및 시행
- 제9조제6항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구축계획”을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정보시스템 표준·공동활용
 3. 인공지능 정책 수립·조정
 4.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구축·운영
 5. 정보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6. 인터넷 서비스 정책 수립·조정
 7. 인터넷 서비스 운영·관리
 8. 공공앱 관리 정책 수립·조정
- 제9조제7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웹기술 표준에 관한 사항
- 제9조제7항제13호(종전의 제9호) 중 “정보화사업”을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시스템[행정포털, 메일, 메신저, 문자전송, 모바일오피스, 정보기술아키텍처(EA), 시도·시군구 행정, 공통행정 시스템] 운영·관리
- 제9조제7항제11호 중 “업무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운영 및 권한 관리”를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간정보정책 계획 수립·조정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추진
- 제9조제8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3차원 기반 Virtual Seoul 구축·운영
제9조제8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간정보 교육·홍보 및 정책발굴
 5. 공간정보 표준화 및 보안관리
 6.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운영, 유통·개방 및 개발 지원
- 제9조제8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2호) 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간정보 플랫폼 및 정책지도 구축·운영
 8. 2차원 기반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운영
 9. 항공사진의 촬영·관리·활용
- 제9조제8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무인동력 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활용
 14. 서울스마트블편신고 구축·운영
- 제9조제8항제15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 정책 수립·조정 및 총괄
 2.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정책 수립·조정
- 제9조제9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통신·정보보안 관련 신기술 및 기술기준 보급
- 제9조제9항제3호(종전의 제5호) 중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 을 “초고속정보통신”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사항
 7. 정보보안 정책 수립·조정
 8.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제9조제9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기본정책” 을 “정책” 으로, “총괄” 을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운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보안수준평가 및 침해사고에 관한 사항
 1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15.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책 수립·조정 및 스마트도시 안전망·안전센터 구축·운영
 16. 정보통신공사업,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9조제9항제1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관리
- 제9조제9항제18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평가협업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담당관·공기업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평가협업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협력상생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균형발전담당관·시민참여예산담당관·공기업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외협력담당관”을 “협력상생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다른”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등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균형발전 업무의 총괄 조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속의예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경제진흥본부에 두는 과)”를 “(경제정책실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제진흥본부에 경제기획관·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과·공정경제과·디지털창업과·투자유치과·도시농업과·거점성장추진단을”을 “경제정책실에 경제일자리기획관·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투자창업과·캠퍼스타운활성화과·도시농업과·지역상생경제과·거점성장추진단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경제기획관”을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경제정책과장·소상공인지원과과장·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정경제과장·디지털창업과장·도시농업과장은”을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투자창업과장·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지역상생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농업과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제일자리기획관은 경제정책, 일자리창출, 디지털산업·창업지원·투자유치, 캠퍼스타운 조성·활성화, 도시농업, 서울과 타 지역 간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상생·협력 등에 관하여 경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4.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5. 직업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6. 직업 훈련시설의 지도·감독
7.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사항
8.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9. 취업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
10. 직업안정 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1.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치구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민간취업 관련 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4. 구인기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일자리 통합전산망 및 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항(중전의 제5항)제22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5항)제12호,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6호를 각각 제13호, 제24호,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 제12호,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9호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5항)에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지원
15.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
16.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
17.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
18.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 관련 다국적기업 유치
19.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20. 영상, 게임 등 콘텐츠산업 개발 및 육성

제11조제4항(중전의 제5항)제26호(중전의 제15호) 중 “설립인가·감독·해산”을 “설립 인가·감독·해산”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5항)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5항)제21호(중전의 제23호) 중 “문화콘텐츠”를 “콘텐츠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5항)제29호(중전의 제26호) 중 “본부”를 “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지원과장”을 “투자창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상공인 자영업”을 “디지털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제11조제6항제4호(중전의 제2호) 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성수IT종합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앱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6. 창업교육 및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등
7. 서울창업허브 등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운영

제11조제6항에 제8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9. 서울창업허브 건립 등 창업 인프라 조성
10. 창업기업 투자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11. 창업기업 유통·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2. 대학 등 민간창업 기관과 협력 추진
13.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

14.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15.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16.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17.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
18.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19.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지원
20.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
21.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
22.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
23.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 관련 다국적기업 유치
24.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25.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26.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설치·운영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경제과장”을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캠퍼스타운 조성·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
2.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운영
3. 캠퍼스타운 조성·활성화 관련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제7항제4호 중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를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캠퍼스타운 박람회 및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제7항제6호 중 “민생대책”을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홍보”로,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7항제8호 중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 거래업”을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종합형, 단위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캠퍼스타운 내 청년 창업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0. 캠퍼스타운 중심 발전축 클러스터 조성
11. 역세권 캠퍼스타운 대학·기업 혁신거점 조성
12. 캠퍼스타운형 리빙랩 구축 및 운영

제11조제7항제13호 중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을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을 “국내·외 대학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중앙정부 협력 및 국가 정책화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7항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거점성장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9.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개발 및 육성
14.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15. 애니메이션 관련 문화재산권에 관한 사항
16. 신성장동력산업 거점조성에 관한 사항
17.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8.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양재R&D 혁신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20.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21.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도시형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23.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
24. 패션·봉제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25.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6.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8항(종전의 제10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10항)제15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유치과장”을 “지역상생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과 타 지역 간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상생협력 정책 수립 및 시행
2. 상생상회 등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인프라 등 지역자원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 등의 창업, 귀농·귀촌 등 지역 프로그램 연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농부의 시장 및 농수산물직거래에 관한 사항
6. 도·농상생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9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복지본부에 두는 과)”를 “(복지정책실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본부에 복지정책과·희망복지지원과·어르신복지과·인생이모작지원과·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를 “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지역돌봄복지과·어르신복지

과.인생이모작지원과.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복지정책과장.희망복지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초보장제도 및 의료급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희망복지지원과장”을 “지역돌봄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제5항제13호 중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및 국민연금 안내”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도시교통본부에 두는 과)”를 “(도시교통실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교통본부에 교통기획과.교통정책과.버스정책과.택시물류과.주차계획과.보행정책과.자전거정책과.교통운영과.교통지도과.교통정보과”를 “도시교통실에 교통기획과.교통정책과.버스정책과.택시물류과.주차계획과.보행정책과.자전거정책과.교통운영과.교통지도과.교통정보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자전거정책과장.교통정보과장”을 “교통정책과장.도시철도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자전거정책과장.교통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통정책,”을 “교통정책, 철도정책”으로,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9호를 각각 제9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를 포함한 미래교통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13조제5항제17호(종전의 제19호) 중 “본부”를 “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시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교통공사 지도감독
2. 서울교통공사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공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서울교통공사 재정 운영 및 건전화 관련 업무
5. 도시철도 노후시설 안전투자 관련 업무
6. 도시철도 서비스 및 이용환경 개선 관련 업무
7. 민자철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악, 연극 등 공연예술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4조제6항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악당 등 공연예술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제8항제16호 중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을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으로, “관리·보호”를 “관리·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제15조제1항 중 “환경정책과·대기정책과·기후대기과·녹색에너지과·자원순환과·생활환경과·에너지시민협력과”를 “환경정책과·대기정책과·기후대기과·차량공해저감과·녹색에너지과·자원순환과·생활환경과·에너지시민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고속버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5항제9호 중 “특정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작차·운행차 저공해화 제도개선”을 “석면함유 가능 물질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건축물 석면 관리 및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2. 석면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13. 보건환경연구원 석면·실내공기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배출총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

15.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제15조제5항제16호 중 “저공해차량 사후관리 계획수립·관리”를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추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건물에너지효율화에 관한 사항

11. LED조명 보급기준 및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부문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등급제 추진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특정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제작차·운행차 저공해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및 제작 관련 사항
 8.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부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9. 저공해조치차량 보조금 집행 및 저공해미이행경유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0. 압축천연가스 차량보급 및 관련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 저공해차량 사후관리 계획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12. 매년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운행차 저공해연료 공급에 관한 사항
 14.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배출가스 및 공회전단속, 광역단속반 운영 및 배출가스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5조제8항(중전의 제7항)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7항)제19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7항)제18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5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제8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제17조제4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간자산의 전략적 매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제1항 중 “관광정책과.관광사업과.체육정책과.체육진흥과.전국체전기획과”를 “관광정책과.관광산업과.체육정책과.체육진흥과.전국체전기획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정책과장.관광사업과장.체육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전국체전기획과장”을 “관광정책과장.관광산업과장.체육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전국체전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권역별·계기별 관광정책 수립·추진
3. 서울관광 거버넌스 운영

제17조의3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9호) 중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를 “서울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산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제3항제6호 중 “관광호텔 확충·관리”를 “도시관광 경쟁력 평가·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역기반 마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제3항제7호(중전의 제13호) 중 “쇼핑관광”을 “여가관광”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관광동향 및 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제3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주거지역 관광지 생활주민 피해조사 및 개선
15. 남북평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17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사업과장”을 “관광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 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서울관광마케팅 전략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7조의3제4항제4호 중 “관광홍보물 제작·배포에”를 “관광 숙박시설 육성·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7조의3제4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 대표 관광코스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제17조의3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 제17조의3제4항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음식관광”을 “의료관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제12호,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류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특화관광산업(음식, 쇼핑, 웨딩, 산업 관광 등) 육성에 관한 사항
14. 스마트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 제17조의3제7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전국장애인체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7조의4제1항 중 “보건의료정책과·건강증진과·식품정책과·생활보건과·동물보호과”를 “보건의료정책과·건강증진과·식품정책과·질병관리과·동물보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정책과장·생활보건과장·동물보호과장”을 “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정책과장·질병관리과장·동물보호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보건과장”을 “질병관리과장”으로 한다.
-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공공개발기획단) ①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공공개발기획단 업무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 ③ 제1항의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④ 공공개발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공공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주요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검토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공공 토지자원의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사전협상제도 운영·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7.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검토에 관한 사항
8. 저이용, 낙후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9.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활용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10.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관한 사항
11. 하천구역 및 주변부 도시공간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호창공원 일대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13. 신이동수단 도입계획에 관한 사항
14. 물재생센터 입체복합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서울숲 과학문화미래관 등 조성에 관한 사항
16. 서울 관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7. 한강4대 핵심사업에 관한 사항

제20조의 제목 “(안전총괄본부에 두는 과)”를 “(안전총괄실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각각 “안전총괄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재난관리기금 운영 총괄

제20조제4항제17호(중전의 제16호) 중 “본부”를 “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8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설공사장(공공·민간) 관리 총괄
9.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에 관한 사항
10. 안전점검의 날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11. 안전점검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12. 더 안전 시민모임 구성·운영
13. 안전취약시설 보수 보강사업 추진
14.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15. 안전어사대 구성·운영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

제20조제7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총괄 건설정책자문단 운영

제20조제9항제21호 중 “손괴자”를 “손괴자”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5.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
26. 지하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27. 도로굴착복구 타당성 검토 및 사후정비에 관한 사항
28. 도로굴착복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의 제목 “(도시재생본부에 두는 과)”를 “(도시재생실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재생본부에 재생정책과, 공공개발센터,”를 “주거환경개선과, 한옥건축자산과를”로, “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 주거환경개선과를”을 “주거환경개선과, 한옥건축자산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재생본부장”을 “도시재생실장”으로, “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을 “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으로, “공공개발센터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을 “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생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에 관한 사항
9. 서울형 도시재생사업(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선정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경제, 사회, 문화 등 통합적 도시재생 관련 지표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3. 마장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5. 새뜰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16. 골목길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7. 도시재생 홍보 및 도시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8. 한강을 포함한 도시공간 재생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의2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역일대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4항제2호 중 “도시재생정책 총괄 및 조정”을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기반시설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4항제4호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 을 “서계동 청과공원 조성사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역 일대 주민공동체 형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4항제6호 중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 을 “노들섬 명소화사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을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4항제9호 중 “도시재생 행정협의체 구성.운영” 을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효창공원 일대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실행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개발센터장” 을 “도시활성화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령운용에 관한 사항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영등포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2제5항제8호 중 “공공 토지자원의 활용성 검토” 를 “장한평 일대 도시재생사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공유재산 위탁개발” 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구통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 등에 관한 사항
 12.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13. 홍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재생과장” 을 “역사도심재생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2제6항제2호 중 “노들섬 명소화사업” 을 “역사도심 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2제6항제4호 중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을 “역사도심 재생 및 활성화” 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역사도심기본계획상 옛길 관련 사항
 6.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을지로 입체보행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8. 정동 일대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역사도심 내 서울옥상 조성에 관한 사항
 10.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1. 세운상가 일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가든파이버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활성화과장”을 “광화문광장추진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화문광장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2제7항제2호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세종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운용”을 “추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화문광장 협의회 등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2제7항제4호 중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준공업지역·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광화문광장 도로·교통·안전대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용자”를 “광화문광장의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광화문광장의 문화재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
 8. 광화문광장 홍보에 관한 사항
 9. 광화문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2제7항제10호 중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정부협약의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사도심재생과장”을 “주거재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층주거지 재생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모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2제8항제3호 중 “도심 산업·상권의 도시계획적 관리”를 “주거지보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심 재생 및”을 “주거재생 지역 내 리모델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거재생 지역 내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주거재생 지역 내 에너지재생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2제8항제7호 중 “도심부(종로구, 중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을 “도시재생뉴딜사업(근린재생일반형·주거지지원형·우리동네살리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선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2제8항제9호 중 “공공용지의 공급과 계획 및 관리”를 “희망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마을기업·마을공동체(근린재생일반형)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2제8항제11호 중 “동대문 성곽공원 조성”을 “창신송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2제8항제13호 중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도시재생지원센터

터(근린재생일반형)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8항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을 “주거환경개선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광화문광장 종합계획”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업무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9항제3호 중 “광화문광장 관리 및 운영”을 “주민공동체 활성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9항제5호 중 “광화문광장 홍보”를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광화문광장 협의회 등 거버넌스 운영”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광화문일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활성화”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빈집 관련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령 및 조례 제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재생과장”을 “한옥건축자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조례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0항제6호 중 “도시재생지원센터(근린재생일반형) 운영”을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주거재생사업 추진 및 정책수립”을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옥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0항에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옥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10. 우수한옥 인증 및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한옥 등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 환경개선 사업

13. 한옥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한옥 보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옥 등 건축자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옥 등 건축자산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토지관리과·도시빛정책과”를 “도시계획과·전략계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토지관리과·도시빛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을 “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심 및 광역중심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생활권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4. 생활권계획의 실행 및 관련 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5. 생활권계획 수립 관련 주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의 제목 “(주택건축국에 두는 과)”를 “(주택건축본부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건축국에 주택정책과·건축기획과·임대주택과·공동주택과·한옥조성과”를 “주택건축본부에 주택정책과·주택공급과·건축기획과·지역건축안전센터·공공주택과·공동주택과·주거정비과·주거사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건축국장”을 “주택건축본부장”으로, “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을 “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으로, “한옥조성과장”을 “주택공급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주거사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택통계 총괄, 주택시장 수요분석·안정대책”을 “주택시장 동향분석·안정대책 및 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임대주택관리 종합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제11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0호, 제7호, 제3호, 제11호 및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제9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9.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적임대주택 공급 총괄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제10호(중전의 제7호) 중 “특별공급계획(승인)”을 “특별공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9호) 중 “주거실태조사”를 “주택통계, 주거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중전의 제10호) 중 “저소득층 융자”를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맞춤형 임대주택개발 운용”을 “주거복지센터 위탁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공공임대주택 관리 총괄”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영·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집합건물 관리 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제18호 중 “주거문화 연구·개발”을 “건축행정시스템 및 제반건축주택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1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1호) 중 “국”을 “본부”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택공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지원주택 공급 업무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5. 청년 및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⑥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사항 검토·확인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안전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사항
6. 민간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7호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제9호 중 “수립”을 “수립 및 추진”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제1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제19호 및 제22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과장”을 “공공주택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에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동주택 감사의 실시
20.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22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정비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6. 정비구역 직권해제 계획수립·실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 수립·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지원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및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원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공지원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조합운영 실태점검 계획수립·실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용자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6.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1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운용 및 시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9.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⑩ 주거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비촉진사업 종합(지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지구(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 구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조례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확보·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수립 및 매몰·용자금 등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10. 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사업현황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4.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제23조의3제1항 중 “동남권계획과·동남권조성과·동북권사업단·서남권사업과·서북권사업과”를 “동남권사업과·동북권사업과·서남권사업과·서북권사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지역발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동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북권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서남권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남권계획”을 “동남권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 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7.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민간부지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8.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23조의3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북권사업단”을 “동북권사업과”로 한다.

제2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인권담당관) ① 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권담당관은 인권업무에 관하여 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3.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4.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결정·이행관리
5.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
6. 시민 인권의식 확산
7.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8.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30조제1항 중 “보하며, 학생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를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연구지원부·식품의약품부·질병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동물위생시험소·강남농수산물검사소 및 강북농수산물검사소”를 “연구지원부·식품의약품부·질병연구부·생활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동물위생시험소·강남농수산물검사소·강북농수산물검사소 및 대기질통합분석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지방서기관으로”로, “대기환경연구부장·물환경연구부장”을 “생활환경연구부장·물환경연구부장”으로,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를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생활환경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유해가스 등 오염원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사업장 및 생활환경 악취오염물질 조사 및 연구

3. 생활환경 소음·진동 조사 및 연구
4. 실내환경오염에 관한 검사 및 연구
5. 석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위해도 평가
6. 지하생활공간 등 실내공기 중 라돈 조사 및 연구
7. 빗공해 조사 및 연구
8.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및 정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생활환경오염물질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제50조를 제50조의2로 하고,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대기질통합분석센터) ① 대기질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대기, 도로변 대기측정망 및 대기질이동측정차량, 전광판 등 설치·운영
2. 대기 중 중금속, 산성강하물 등 유해물질에 관한 조사, 연구
3.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경보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 및 연구
6. 황사 등 장거리이동물질과 기후·생태계변화 원인물질 조사 및 연구
7.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및 생태계 유해성 조사, 연구 및 평가
8. 대기질통합분석시스템 운영
9. 대기질 분석 예측을 위한 대기모델링 운영
10.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및 정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제68조제1항 중 “도시철도계획부·도시철도사업부·도시철도토목부·도시철도건축부·도시철도설비부를 두고, 도시철도계획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을 “도시철도계획부·도시철도사업부·도시철도토목부·도시철도건축부·도시철도설비부·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을 두고, 도시철도계획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사업관리”를 “도시철도공사의 사업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별점 부과 관리 총괄
9. 승강편의시설 사후관리 총괄
10. 도시철도공사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총괄
11. 경전철(우이신설선 등) 시공 관련 사후관리

제68조제5항제1호 중 “정거장 마스터”를 “정거장”으로, “실시설계”를 “설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토목 설계 및 시공관리
2.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건축 설계 및 시공관리

3.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설비(전기, 기계, 통신, 신호) 설계 및 시공관리
4.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5.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설계, 시공,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평가 등 업무
6.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공사장 공정관리, 품질관리 업무
7.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방재·안전계획 및 스마트 정거장 구축 업무
8.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공사장 교통대책 수립
9.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각종 인·허가 업무 및 영향평가 업무 총괄
10.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 위수탁 구간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69조제1항 중 “총무과·건설총괄과·홍보예산과·경리과를 두며, 총무과장·홍보예산과장·경리과장”을 “총무과·건설총괄과·재무예산과를 두며, 총무과장·재무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계획과·도시철도설계과·경전철설계과·경전철관리과·영동대로복합개발과”를 “계획과·도시철도설계과·경전철설계과·경전철관리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정관리과·경전철1과·경전철2과·신교통1과·신교통2과”를 “공정관리과·경전철과·신교통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에 사업총괄과·복합개발토목과·복합개발건축과·복합개발설비과를 두며, 사업총괄과장·복합개발토목과장·복합개발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합개발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부분부장 밑에 안전총괄과를 두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3조제2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세외수입 총괄

제8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점·전망카페·쉼터 등 공원편익시설 관리

제83조제3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4호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상택시 및 도선사업의 인·허가 및 관리
7. 세빛섬 운영 및 관리
8.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운영 및 관리

제8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환경 정책수립 및 생물상 조사
2. 생태계 조사, 복원, 보전 및 유지관리

제83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원 여가정책 기획 및 시행 총괄

제83조제4항제5호 중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발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녹지·생태공간 조성”을 “체육시설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녹지, 생태공간, 조경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9. 어린이놀이터, 음수대, 그늘막, 기타 체력단련활동 지원 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10. 캠핑장 조성, 운영 및 유지관리

11. 주차 정책 수립, 주차장 조성, 운영 및 유지관리

제83조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수영장·물놀이장 조성, 운영 및 유지관리

제84조제2항 중 “환경과”를 “환경수질과”로, “환경과장”을 “환경수질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원기획과·생태공원과·녹지관리과·공원사업과를 두고, 공원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생태공원과장”을 “생태환경과·공원여가과·녹지관리과·공원시설과를 두고, 생태환경과장”으로, “녹지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사업과장은”을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녹지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시설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전설비과장”을 “기전설비과장, 기반시설과장”으로,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반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를 “지방시설사무관으로”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경영지원부·학예연구부·한양도성연구소 및 청계천박물관을”을 “경영지원부 및 학예연구부를”로, “학예연구부장 및 한양도성연구소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청계천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을 “학예연구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백인제가옥”을 “백인제가옥, 돈의문 전시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양도성연구소, 한양도성박물관, 청계천박물관 및 동대문역사관 등 운영관리

제9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서울공예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1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를 “지식문화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지식문화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도서관”을 “서울도서관 분관, 지역도서관 등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5. 책 보물섬 조성, 관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111조제4항제2호 중 “및 독서문화 진흥”을 “진흥 및 운영 개선”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5항제12호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정책실·복지정책실·도시교통실·문화본부·기후환경본부·행정국·재무국·평생교육국·관광체육국·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노동민생정책관·비상기획관·스마트도시정책관·남북협력추진단·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사항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총괄실·도시재생실·도시계획국·주택건축본부·푸른도시국·물순환안전국·지역발전본부·소방재난본부·도시공간개선단·공공개발기획단·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 소관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정무부시장은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인권담당관의 소관 업무와 대국회·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민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을 “경제진흥실장, 복지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으로,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을 “공공개발기획단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본부장”으로 한다.

- ③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정보기획관, 복지본부장”을 “스마트도시정책관,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 ④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한다.

- ⑤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통계데이터담당관”을 “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 ⑥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기획관, 복지정책관”을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으로 한다.

- ⑦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일자리노동정책관”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일자리노동정책관”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일자리정책담당관”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디지털창업과장”을 “투자창업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소상공인지원과장”을 “소상공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 ⑧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감사관”, “정보기획관”, “복지본부장” 을 각각 “감사위원장”, “스마트도시정책관”, “복지정책실장” 으로 한다.
- ⑨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복지본부장” 을 “복지정책실장” 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복지본부” 를 “복지정책실” 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 실행력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실·본부·국 및 보좌기관 재편, 부서 신설·폐지, 소관업무 정비 등 기구 변동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보좌기관 규정 정비(안 제3조)

- (1) 상생·공정·노동 등 경제민주화 실행체계 일원화 및 스마트도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일자리노동정책관’, ‘정보기획관’ 을 각각 ‘노동민생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으로 재편
- (2) 청년정책 기획·수행 및 인권업무 독립성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 을 각각 ‘시장’,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재편
- (3)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행정1부시장 직속 ‘남북협력추진단’ 신설, 대규모 부지 개발 시 체계적·종합적 의사결정을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 ‘공공개발기획단’ 신설

※ 남북협력추진단 : ’ 18. 11. 1. 신설

- (4)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젠더특보’ (전문임기제) 직위 신설

나. 조직개편 관련 기구 및 업무분장 정비

- (1) ‘청년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 이관·재편, ‘시민 정책참여 기능’ 강화(안 제5조)
- (2)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업무체계 정비를 위한 ‘신속행정담당관’ 폐지, 부서 간 업무조정(안 제6조)
- (3) 시장 직속 ‘청년청(담당관)’ 재편, 개방형 직위 지정, ‘청년인재 발굴·지원’ 업무 신설(안 제6조의2)
- (4) 젠더폭력 예방·대응,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여성권익담당관’ 신설, 부서 간 업무조정, 행정용어 변경 등(안 제7조)
- (5) ‘일자리노동정책관’ 을 ‘노동민생정책관’ 으로 재편, 실·본부·국 간 기능 조정, 부서 직제순서 변경 등(안 제7조의2)
 - ▶ 노동민생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 경제정책실 소상공인지원과, 공정경제과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 ▶ 노동민생정책관 주무부서를 ‘노동정책담당관’ 으로 설치

- (6) ‘정보기획관’ 을 ‘스마트도시정책관’ 으로 재편,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담당관’ 재편(안 제9조)
 - ▶ 통계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담당관
- (7) 지역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강남북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대외협력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을 각각 ‘협력상생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으로 재편, ‘숙의예산 제도 운영’ 업무 신설(안 제10조)
- (8) 산업거점 기반 일자리 창출 시너지 제고를 위해 ‘경제기획관’ 을 ‘경제일자리기획관’ 으로 명칭 변경, 창업인프라 생태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창업과’ 를 ‘투자창업과’ 로 재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신설, 지역상생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상생경제과’ 신설 등(안 제11조)
- (9)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돌봄복지과’ 신설,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안 제12조)
- (10) 도시철도 노후화 개선 등 안전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시철도과’ 신설, ‘미래교통정책 수립 기능’ 강화(안 제13조)
- (11) 국악, 연극 등 ‘공연예술 활성화’ 강화,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통한 기능 명확화(안 제14조)
- (12) 교통 발생 미세먼지 저감 추진을 위한 ‘차량공해저감과’ 신설,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안 제15조)
- (13)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광사업과’ 를 ‘관광산업과’ 로 재편, ‘전국장애인체전 기획·운영업무’ 신설 등(안 제17조의3)
- (14)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를 ‘질병관리과’ 로 재편하여 감염병 즉각 대응체계 구축(안 제17조의4)
- (15) 행정2부시장 직속 ‘공공개발기획단’ 신설 및 개방형 직위 지정(안 제18조)
- (16) ‘공공개발센터’ 폐지,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한옥건축자산과’ 신설, 실·본부·국 간 기능 조정 등(안 제20조의2)
 - ▶ 주택건축본부 한옥조성과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 재생협력과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주거사업과 →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17) 도시계획 기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정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과’ 신설, 부서 간 업무조정 등(안 제21조)
- (18) 주거 취약계층별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택공급과’ 신설 및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실·본부·국 간 기능 조정, 부서 명칭 변경 등(안 제22조)
 - ▶ 임대주택과 → 공공주택과
- (19)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폐지, ‘동남권사업과’ 및 ‘동북권사업과’ 신설, ‘동남권계획과’ 및 ‘동남권조성과’ 폐지(안 제23조의3)

- (20) 정무부시장 직속 ‘인권담당관’ 재편, ‘인권영향평가업무’ 신설 등 기구변동 사항 반영(안 제24조의2)
 - (21)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신설 및 ‘대기환경연구부’를 ‘생활환경연구부’로 재편(안 제41조, 제45조, 제50조)
 - (22)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및 ‘도시철도사업부’ 재편, ‘영동대로복합추진단’ 신설 등 (안 제68조)
 - ▶ 총무부 : ‘홍보예산과’, ‘경리과’ 통.폐합 → ‘재무예산과’
 - ▶ 도시철도사업부 : 경전철 1.2과 → 경전철과, 신교통 1.2과 → 신교통과
 - (23) 서울도서관 부서 명칭 변경, 부서 업무 현행화 등(안 제111조)
 - ▶ 행정지원과 → 지식문화과
- 다. 기타 현안 업무 반영 등 기구 및 업무분장 정비
- (1) 대변인 개방형 직위 지정해제(안 제4조)
 - (2) 행정국 인사과에 ‘조직문화 개선업무’ 명시, 정보공개정책과에 ‘업무관리시스템 업무’ 신설(안 제16조)
 - (3) 재무국 자산관리과에 ‘민간자산의 전략적 매입’ 기능 부여(안 제17조)
 - (4) ‘재난관리기금 운영 총괄’ 업무 신설 등 안전총괄실 현안 사무분장 정비(안 제20조)
 - (5) 시립대 ‘인권센터’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업무변동 사항 반영(안 제30조)
 - (6) 상수도 안전점검 및 재난재해 대비 관리 총괄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 부분부장 직속 ‘안전총괄과’ 신설(안 제74조)
 - (7) 한강사업본부 부서 간 업무 조정, 부서 명칭, 직제 순서 및 부서장 정원 직렬조정 등(안 제83조, 제84조)
 - (8) 서울역사박물관 기구 및 사무분장 정비 (안 제97조)
 - (9) ‘서울공예박물관장’ 개방형 직위 지정 (안 제103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25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18,422	4,579	328	8,019	5,339	157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451	4,395	319	403	5,177	157
-------	--------	-------	-----	-----	-------	-----

같은 표 4급 소계란, 서기관란, 기술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소계	242	147	16	8	67	4
서기관	97	74	6	7	9	1
기술서기관	61	22			39	

같은 표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란, 기술서기관또는시설사무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서기관또는 행정사무관	6	6				
기술서기관또는 시설사무관	1	1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시설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공업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380	902	45	54	350	29
행정	632	450	42	22	94	24
공업	61	32			28	1
시설	186	115			70	1
행정또는시설	64	53			8	3
행정·공업 또는시설	80	71		1	8	
공업또는시설	23	10	1	1	11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세무란, 사서란, 전산란, 공업란, 환경란, 시설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행정·공업·시설·전산란, 행정또는전산란, 방재안전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349	1,767	103	102	1,293	84
행정	1,241	810	80	40	255	56
세무	47	44	1			2

사서	18	1		7	10	
전산	84	60	3	3	16	2
공업	343	112	6	4	219	2
환경	41	22		13	6	
시설	539	291	2	2	227	17
행정또는 학예연구소	26	14			12	
행정·공업또는 시설	79	74			5	
행정·공업·시설·전산	9	8			1	
행정또는전산	8	6			2	
방재안전또는 시설	18	16			2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전산란, 공업란, 녹지란, 약무란, 시설란, 행정또는전산란, 행정또는학예연구소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행정·공업·시설·전산란, 공업또는시설란, 전기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362	1,291	98	149	1,786	38
행정	1,261	678	69	59	429	26
사회복지	33	19			13	1
전산	125	73	5	9	37	1
공업	405	27	5	12	359	2
녹지	79	10		2	67	
약무	14	2			12	
시설	491	202	1	5	276	7
행정또는전산	12	4			8	
행정또는 학예연구소	18	2			16	
행정·공업또는 시설	37	36		1		
행정·공업·시설·전산	12	11			1	

공업또는시설	10	4			6	
전기운영	59	3			56	

같은 표 7급 직렬란 중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 다음에 행정·전산또는사회복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전산또는 사회복지	1	1				
-----------------	---	---	--	--	--	--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전산란, 방호란, 농업란, 방송통신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통신운영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화공운영란, 사육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710	208	48	79	1,374	1
행정	222	35	15	16	156	
전산	34	13		6	15	
방호	95	31	6	3	55	
농업	3				3	
방송통신	24	3		6	15	
시설관리	137	3			134	
운전	113	21	3	12	77	
통신운영	10	6		2	2	
전기운영	93	2	1		90	
기계운영	217	2	2	1	212	
화공운영	3				3	
사육운영	11				11	

같은 표 9급 소계란, 공업란, 운전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248	5	4	5	234	
공업	60				60	
운전	8				8	

전기운영	12				12	
기계운영	3			1	2	

같은 표 9급 직렬란 중 방송통신란 다음에 농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업	2				2	
----	---	--	--	--	---	--

같은 표 연구직 계란, 연구관 소계란, 학예연구관, 환경연구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 계	376	21		193	162	
연구관 소계	62	3		35	24	
학예연구	21	3			18	

환경연구	13			13		
------	----	--	--	----	--	--

같은 표 연구사 소계란, 학예연구관, 환경연구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사 소계	314	18		158	138	
학예연구	87	13		2	72	

환경연구	76	1		60	15	
------	----	---	--	----	----	--

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위란, 소방장란, 소방교란, 소방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계	7,027	133		6,894		
---------	-------	-----	--	-------	--	--

소방위	359	35		324		
소방장	750	37		713		
소방교	1,658	3		1,655		
소방사	3,669	8		3,661		

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란, 조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공무원 계	505			505		
---------	-----	--	--	-----	--	--

조교	69			69		
----	----	--	--	----	--	--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기구신설 및 시정 핵심과제 추진 등 인력증원을 위해 총 정원을 18,239명에서 18,422명으로 183명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과제 추진 및 주요기능 강화 등을 위한 증원

- (1) 미래·안전·복지·균형 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력 확보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증원(+100명)
- (2) 주요기능 강화와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실무인력 증원(+33명)
- (3) 소방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 및 시립대 교원 확충(+32명)
- (4)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인력 및 입법지원 전문인력 증원(+18명)

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 및 정원 이체

- (1) '민주주의서울추진반' 신설, Virtual Seoul 구축, 돌봄포털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 및 정원 이체(53명)
- (2) 관리운영직군 퇴직 등에 따른 직렬·직급 조정(27명)
- (3) 클라우드센터운영과 신설 등에 따른 정원 이체(6명)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